

# 정 관

재단법인 창강재단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및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에 필요한 지도적 인물 배양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며, 구호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창강재단" 이라 칭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제 4 조 (사업)

1.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지급 및 장학사업
  - 2) 학술연구비의 지급
  - 3)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 4) 보육시설지원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부동산 임대사업
  - 2) 주차장 시설 관리업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 및 공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 제 6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 7 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10 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 11 조 (회계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 사 : 5 인
  - 2) 감 사 : 2 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 17 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19 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1.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 4 장 이 사 회



### 제 25 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 27 조 (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28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 29 조 (이사회 소집)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0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5 장 보 칙

#### 제 32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4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5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개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7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안 태 식	종로구 이화동 25-1	4
이 사	김 관 진	용산구 신창동 36	4
이 사	원 증 문	은평구 역촌동 7-5	4
이 사	이 무 규	동작구 상도동 256-203	2
이 사	전 우 탁	강남구 서초동 590 무지개 아파트 9-507	2
이 사	안 병 표	성북구 안암 5가 110-6	2
감 사	손 등 인	강남구 청담동 84-19	2
감 사	서 우 식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우트럼프 월드 8-903	1

**제 38 조 (회계의 공개)**

이 법인은 결산 공개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주무관청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한다. (주무관청 및 국세청 결산 자료제출일은 3월31일까지 제출하며,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 39 조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등)**

1. 이 법인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의무를 수행함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창강재단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단, 기부금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2. 재단법인 창강재단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changkang.kr> 개설 운영한다.
3. 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기 본 재 산	현 금	₩50,000,000.-	
	소 계	₩50,000,000.-	
보 통 재 산	현 금	₩10,000,000.-	
	소 계	₩10,000,000.-	
계		₩60,000,000.-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52,142	기업은행
증금채		11,277,600,000	기업은행
주 식	110,000주	550,000,000	창강산업(주)
토 지	1,580.5㎡	1,864,990,000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38
건 물	4,783.82㎡	3,254,458,430	"
계		16,947,100,572	



현재의 임원 현황

(2021.04.15.)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안 병 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12동 505호	4
이 사	김 영 욱	인천직할시 중구 하늘별빛로 86, 923동 403호	4
이 사	이 상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350, 527동 204호	4
이 사	류 해 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37, 221동 1304호	4
이 사	강 연 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104동 402호	4
감 사	조 완 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6가길 23-66, 401호	2
감 사	서 우 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143, A동 903호	2

별첨1.

## 정관 변경안

1. 재단법인 창강재단의 정관 제4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재단법인 창강재단의 정관 제38조(회계의 공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단법인 창강재단의 정관 제39조(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4조 (사업)

1.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지급 및 장학사업

\* 무상교육으로 인한 '장학금지급 규정' 을 '장학금지급 및 장학사업' 으로 개정하여, 장학사업의 확대를 위한 취지- 예) 학생교재지원, 도서관도서지원 등

\* 위사항 사전에 교육청 주무관과 논의된사항으로 목적사업 별도변경으로 불수(없고, 기존안과 동일규정으로 해석.

#### 2) 학술연구비의 지급

#### 3)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 4) 보육시설지원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부동산임대사업

#### 2) 주차장시설 관리업

\* 주차수입증가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2019년부터 정관에 주차수입 근거 기재 권고검토사항으로, 내부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간이발급을 추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단말기설치후) 발급을 시행하려 함.

### 제 38 조 (회계의 공개)

이 법인은 결산 공개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주무관청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한다. (주무관청 및 국세청 결산 자료제출일은 3월31일까지 제출한다.)

제 39 조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등)

1. 이 법인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의무를 수행함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창강재단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단, 기부금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2. 재단법인 창강재단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changkang.kr> 개설 운영한다.

3. 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

\* 회계의공계 및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등에 대한 공익법인 의무사항 - 결산 및 기부금에 대한 국세청홈택스 , 재단홈페이지에 공고 의무조항 적용 (홈페이지 구축 운용)



## (재)창강재단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 4조 (사업)</b></p> <p>1.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p> <p>1) 장학금 지급</p> <p>2) 학술연구비의 지급</p> <p>3)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지원</p> <p>4) 보육시설지원</p> <p>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p> <p>1) 부동산임대사업</p> <p>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 4조 (사업)</b></p> <p>1.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p> <p>1) 장학금지급 및 장학사업</p> <p>2) 학술연구비의 지급</p> <p>3)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지원</p> <p>4) 보육시설지원</p> <p>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p> <p>1) 부동산 임대사업</p> <p>2) 주차장 시설 관리업</p> <p>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7조(재산의 관리)</b></p> <p>5) 기본재산 처분시 이사회 사전안내 확인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하며, 사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6)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의 30%내에서 보통재산으로 전환 후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b>제 38조 (회계의 공개)</b></p> <p>이 법인은 결산 공개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주무관청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한다. (주무관청 및 국세청 결산 자료제출일은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p>

제 39조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1. 이 법인을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의무를 수행함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창강재단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단, 기부금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재단법인 창강재단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changkang.kr> 개설 운용한다.
3. 이 법인은 각 사업년도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를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한다.

## 정관변경 이유서[사유서]

1. 본 법인의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제4조 1-1 '장학금지급' 을 '장학금지급 및 장학사업' 으로 변경하여, 장학사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함.

예) 장학금사업으로 기재되어, 도서관도서지원, 학생교재지원 등 탄력적지원.

2. 본 법인의 수익사업중 임대사업의 수입과 별도로 주차수입으로 회계, 세무처리 하였으나, 주차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국세청(세무서)에서 정관에 수익사업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급적 간이영수증 금액을 최저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임.

당 법인은 제4조 2-2 '주차장시설사업' 을 신설조항으로 정관에 기재하고, 주차수입에 따른 국세청세무신고와 단말기설치 운용을 하고자함.

3.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별첨 정관변경안과 같이 정관 제38조(회계의 공개), 제39조(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와 관련된 규정을 변경,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법정기부금 단체에 관련된 정관변경]

예: 홈페이지 운용과 함께 홈페이지에 결산공고, 기부금관련공고 등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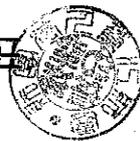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개정안 참조반영/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개정안 반영-

※ 정관변경안

2021년 11 월 일

재단법인 창강재단

이사 안병표



서울시 교육청 귀하